

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
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정이유

-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 복지관 설치근거 기재(안 제1조)
- 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규정(안 제6조)

4. 의 견 제 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의회
- 전 화 : 043)740-3089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재활사업추진을 위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애인이”를 “등록 장애인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<u>재활사업추진을 위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이용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영동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<u>장애인이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 <u>등록 장애인으로서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</p>